

서울시 인권정책의 의미

문 경 란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 부위원장)

2014. 12. 16

서울시의 인권도시 추진 배경

지방 정부의 책무성

- 지방정부의 인권보장 책무성

“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 지자체도 그 책임의 일부를 분담하는 것

- 인권친화적 시장의 선출

- 인권변호사 출신의 시장, 거버넌스와 인권존중의 지향성

- 후보시절(2011) '서울시민권리선언'발표 ... 인권친화적 행정의 출발점 제시

- 도시 행정의 목표 변화

-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의 빈곤과 차별의 심화

- 공리주의적 정책 추구에서 소수자와 약자 보호 및 차별 시정으로

도시권의 등장

- '도시인권'의 등장

- 1) 68혁명과 '도시에 대한 권리'의 등장

- 앙리 르페브르 : "도시는 시민이 만드는 작품", 도시를 만들 권리, 전유의 권리, 참여의 권리

- 2) 세계화 시대의 이주자 증가와 시민권의 부재

- 도시가 거주자 중심의 인권보장의 단위로서 부각

- 3) 사회권과 도시에 대한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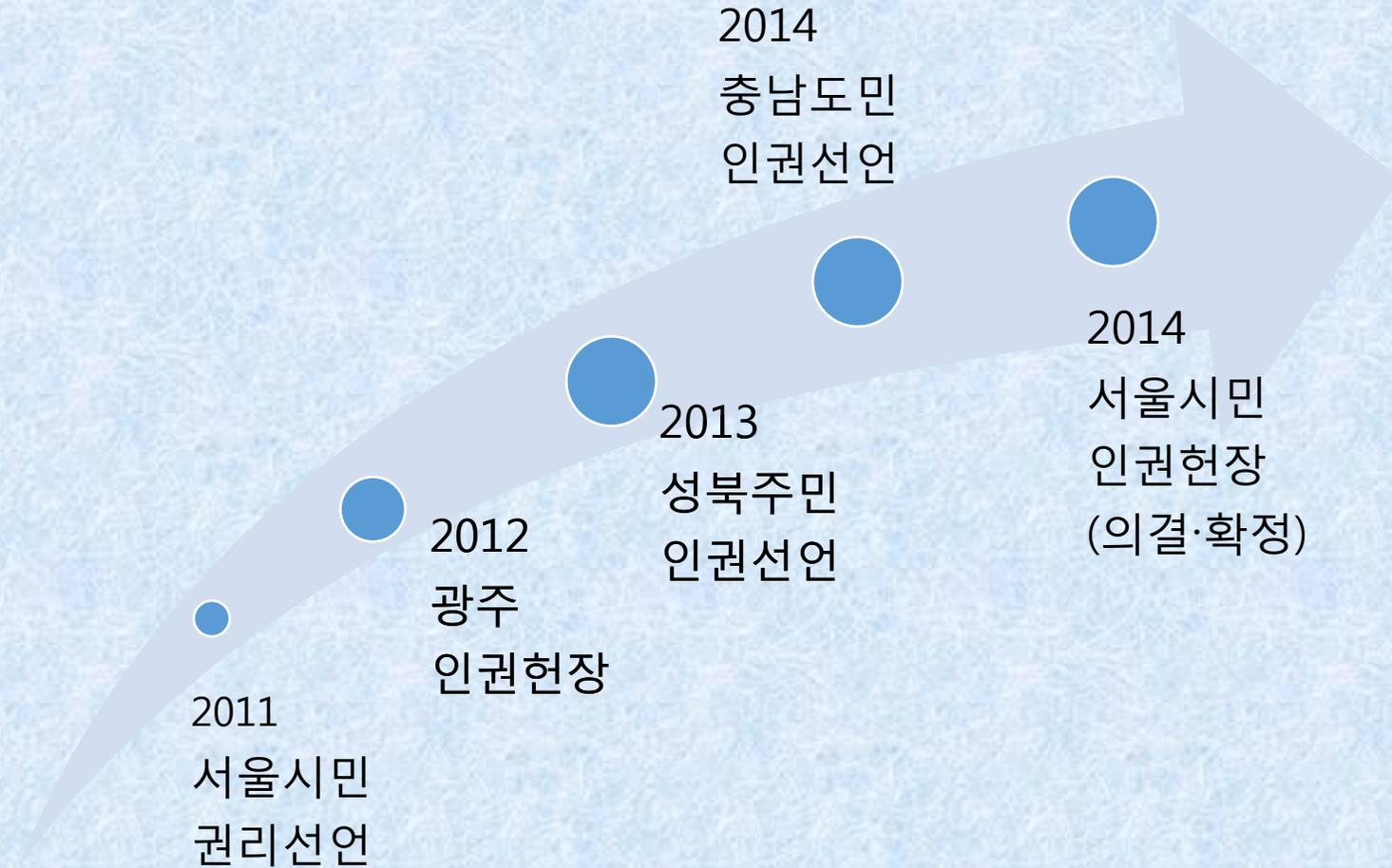
- 식수, 주거, 대중교통, 교육, 환경, 안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권보장에 효과적

도시는 시민의 실질적인 인권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생활 공간

도시권의 세계적 전개 과정



한국의 인권도시 운동



지자체 인권정책 추진 현황

인권도시구조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규범	헌장	광주, 충청도민 인권선언	서울 성북구 인권선언문
	조례	광주시 등 17개 시도 중 13개	부산 해운대구 등 총 227개 중 48개
	그 외 규범	서울시민권리선언, 서울시 공무원 인권행정 강령	울산 동구 인권도시 선언문
제도	인권 담당관	광주(국), 서울(과)	서울 성북구, 광주 동구
	인권위원회	광주, 서울, 울산, 대전, 충남	서울 성북구, 울산 동구, 수원 등 9곳
	인권보호관	서울, 광주	
	인권센터		광명시, 울산 동구
정책	인권기본계획	광주, 서울, 충남	부산해운대구 등 4곳 (서울 성북구 2014년 예정)
	인권영향평가		성북구 공공청사 신축 시 도입(2012)
	인권지표	광주	서울 성북구
	공무원인권교육	서울, 광주	경기 광명시

서울시의 인권정책 운영체계

추진과정



인권규범

1. 인권기본조례 (2012. 9. 28)
2.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2011. 1. 13)
3.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2012. 11. 1)

서울시민권리선언

서울시 인권헌장

서울인권기본조례

인권정책기본계획

기본조례

인권

-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시민

-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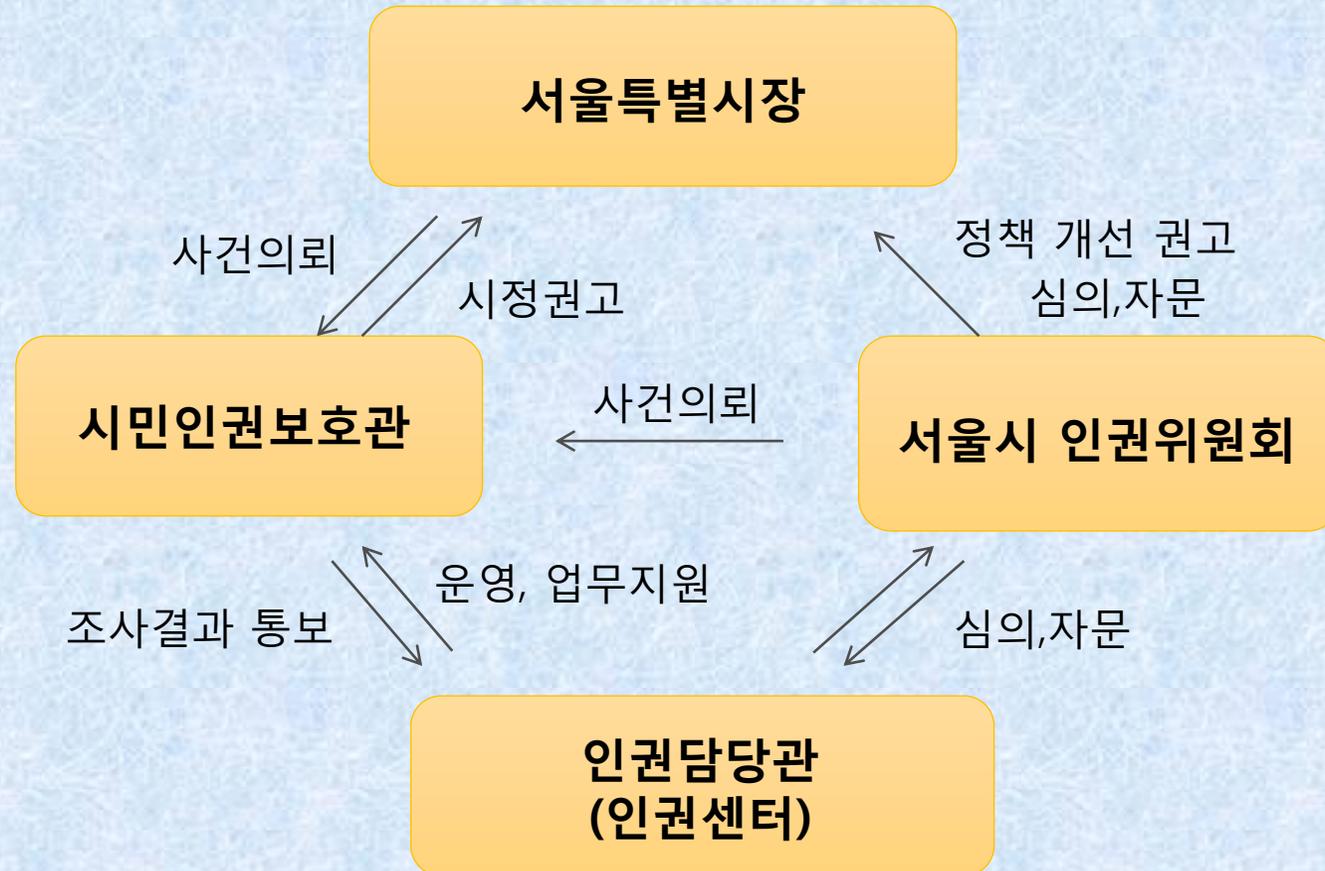
인권도시

- 모든 시민의 인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며 행복한 도시 공동체를 구현해 나가는 도시

시장의 책무

- 시민인권 보호 증진 노력
- 시민 참여 최대 보장
- 인권침해 시정 노력

제도



인권담당관 운영현황 (3팀14명)

인권정책팀

(6명)

- 인권조례 제정 등 법제도 개선
- 인권위원회 운영지원
-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 시민인권 실태조사

인권보호팀

(3명)

- 시민인권보호관 지원
- 인권침해 접수 및 상담
- 인권침해 조사지원 및 시정조치 관리
- 법률상담 서비스 지원

인권협력팀

(4명)

- 공무원 등 인권교육 추진
-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 인권 매뉴얼 제작
- 국내외 인권단체 교류 및 협력

시민인권보호관

- 운영개요

- 구성 : 인권전문가 3명, 임기 2년
- 직무 : 인권침해 사항 조사 및 권고, 독립적 업무 수행

- 조사대상 범위

- 조사대상 : 인권센터 상담 접수 사항, 시장·위원회 조사의뢰 사항
- 조사범위 : 시, 자치구(시 위임 사무), 출자·출연기관, 시 사무위탁기관, 시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

- 조사현황

- 전과를 이유로 한 공무원 임용차별 등 21건 개선권고

인권위원회

- 설립 : 2012. 11. 27
- 위원 : 총 15명 (위촉 14명, 당연직 1명), 3년 임기
인권 전문성과 시민 대표성

< 수행업무 >

• 심의·자문

-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 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 시장, 위원장,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자문

-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회의 출석 요구 가능
-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인권침해 사항 조사 의뢰 가능
- 시 인권 정책에 대한 의견청취 가능

• 권고

- 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 시장에게 개선권고 할 수 있음

인권위의 주요활동

❖ 서울시 인권위원회 회의

- 정기회, 임시회, 소위원회, 워크숍 등
- 회의개최 실적 : 총43회
 - 12년도 : 2회 (정기회 1, 임시회 1)
 - 13년도 : 17회 (정기회 4, 임시회 8(워크숍 2), 소위원회 5)
 - 14년도 : 24회 (정기회 4, 임시회 6(워크숍 1), 소위원회 13, 워크숍 1회)

❖ 서울시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자문

❖ 서울시 공무원 인권교육 자문

❖ 120다산콜 상담사 인권보호대책 마련 권고, 서울시민 인권헌장 관련 권고

❖ 인권헌장 제정 주도

❖ 인권포럼

❖ 월례 세미나

❖ 토론회

❖ 네트워크 구축 등

서울시 주요 인권정책

1)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 2013년 서울시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 2013년 상반기 주요활동
 - 목표 설정 및 73개 과제 선정, 세부사업 검토

비전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					
정책 목표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		인권 지향적 도시 환경 조성	인권 가치 문화 확산	인권 제도 기반구축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
중점 과제	장애인	어르신	도시	공무원	인권행정	시민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장벽 제거 탈시설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르신의 일할 권리 확대 홀로 사는 어르신 삶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구에게나 장벽이 없는 도시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 인권을 기억하고 배우는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친화적 행정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행정 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이 참여하는 인권행정 운영
	이주민	성소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체계 마련 의료건강권·사회서비스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견·차별 해소 				
	여성	어린이·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안전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권리 보장 사회조성 학교밖 청소년 지원 	주거	시민	일반행정	도시
	노동	새터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별·고용불안 없는 노동환경 조성 노동 기본권이 보장 받는 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이탈 주민지원 문화소외시민 문화소외 시민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권이 보장되는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감수성 향상 인권 문화조성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에 기반한 행정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도시 네트워크 구축

2) 공무원 인권교육

- 2013년 하반기 부터 실시
- 규모 : 2013년 - 1만2천명, 2014년 2만명
- 특징
 - 중점교육(4시간, 참여형)·일반 교육, 소규모 강의(50명 제한),
 - 인권전문가 (pool)구성, 인권강사 양성과정 운영
 - 인권교육 모니터링 및 평가
 - 인권교육 전문가 연찬회, 포럼 운영(2014)

3)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추진

- 시민이 만드는 서울시민 인권헌장
 -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 구성 (14. 8.6~12.31)
 - 시민위원, 124명, 전문가 40명
 - 위원장 :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부위원장 :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장)
- 총 6차례의 시민위원회 개최
 - 일반 시민 의견 듣는 2회의 토론회, 공청회, 인권콘서트
 - 인권시민사회 9개 분야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약 40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 시민성과 전문성의 결합
- 헌장은 전문 및 6개 장의 총 50개조로 구성, 전문 일반원칙(5개조), 참여와 소통(6개조), 안전과 건강(15개조), 환경과 문화(9개조), 더 나은 미래(6개조), 실천(9개조)
- 서울시의 헌장 선포 거부, 시민 주도의 낭독식 개최(2014. 12. 10)

4)서울시 인권위의 정책권고

1.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 인권상황에 대해 서울시장에 첫 권고

- 전국 최초로 콜센터 감정노동·근로환경 등 6개 부문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 권고
 - 폭언 및 성희롱에는 1회 경고 후 전화종결 등 인권침해 개선책 제시
 - 건강·안전 근로환경 마련 및 실태조사, 모성보호 법정휴가 사용 촉구
 - 국제기준 부합 '전자업무시스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이행
 - 민간위탁이 상담사의 인권침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근원이므로 직접고용 등 고용구조 개선해 상담사의 노동인권 보장할 것 등
- 서울시장 권고 즉시 수용 및 권고 반영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

2. 서울시민 인권헌장에 관한 권고

-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의 인권헌장 의결 및 확정을 인정하고 선포할 것
- 시민위원회 제6차 회의과정에 발생했던 의사진행 방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문책
- 공청회 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 강구
-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충실히 이행할 것

5)기타

-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 1) 이주민 대상 사법 통번역사 양성
 - 2) 돌봄 노동자의 건강과 직무실태에 대한 지침서 제작(2013)
 - 3) 신촌 연세로 보행권 회복 프로젝트(2014)
-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 발간
- 무료법률상담소 운영
- 인권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인권배심원제 도입
- 인권단체와의 간담회, 인권포럼 운영

6-1) 인권정책의 mainstreaming



6-1) 인권정책의 mainstreaming



도시정비사업

- 재건축
- 재개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도시재생사업

- 기존거주자의 지속적 생활여건 확보
- 사회·문화적 기능회복
- 도시경제 회복

서울시 인권정책의 의미

인권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 권리담론의 힘!

: 시혜가 아니라 권리

⇒ 자력화(empowerment),
당당한 주권자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

시민/ 행정의 주체/참여자/ 창작자/최종 책임자

단체장이 바뀌어도 인권이 제도와 규범적 가치로 정착

: 재량권이 아니라 의무

공무원은 행정의 코디네이터 또는 촉진자



서울시 인권정책 평가 - 1.1

- 목표 : 인권정책의 실현과 내실화

- 가시성, 업적성 인권 행정 지양

1) 실행력을 담보한 '인권정책기본계획' 짜기

- 목표 :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는 정책 +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보행권 등)
- 입안 단계에서 개별부서와 인권위원과의 토론 및 소통
- 개별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
- 부실한 이행 모니터링

2) empowerment를 목표로 한 공무원 인권교육

- 시민의 인권 보장의 책무자로서의 공무원, 노동자로서의 공무원, 시민으로서의 공무원
- 대형 집단 의무교육 탈피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연 1회 교육의 효과성(?), 의무 교육의 한계 뛰어넘기

서울시 인권정책 평가 - 1.2

3) 인권침해 정책을 인권친화적 정책 및 현장으로 바뀌가기

-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의 감정노동에 대한 인권적 분석과 비판, 전자감시·평가 방식 등에 대한 문제 제기
- 서울시가 고민해 오던 상담사 직고용에 대한 과감한 권고와 사회적 반향, 시의 전향적 수용

4) 은근한 기대와 인권의 불씨 살리기

- 중앙정부 차원의 인권 확대와 인권의 지방화
- 인권을 일상 생활 속에 녹여내기

서울시 인권정책 평가 - 2.1

- 서울시민 인권헌장 파행을 통해 본 시민참여와 인권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는?
 - 50개 조항 중 45개 조항은 참석자 전원 일치로 통과, 5개조항은 대표토론을 거쳐 표결
 - 서울시, 전원합의방식 아니라며 “무산 선언”
 - 시민위원회 주체로 낭독식 개최
 - 정치 앞에서 제동걸린 인권행정 : 서울시, 사회적 합의 안됐다는 이유로 인권헌장 선포 거부했지만 성소수자 차별 여론 의식한 결과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 제1차회의

19 2014.10.21(수) 19:00 | 19 시계서당 신사당 대강당

- 1-4
인권의 의미
- ✓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에 주목하는 자세
 - ✓ 인간 존엄에 대한 깊은 이해에 도달하는 길
 - ✓ 감추어진 참실을 꿰뚫어보는 힘
 - ✓ 질문 자체를 변화시키는 힘
 - ✓ 우리가 서로 연결된 존재임을 일깨우는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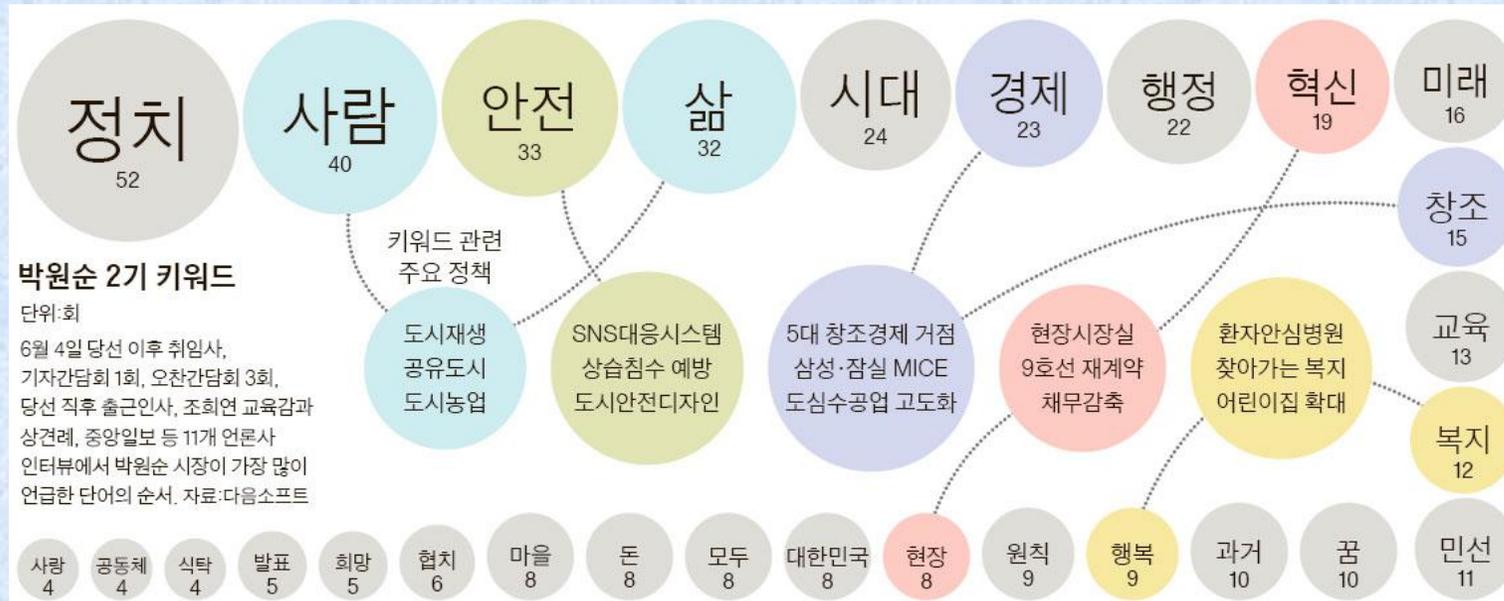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축하합니다

[기자회견] 2014년 12월 10일 12시, 서울광장 /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을 축하하는 시민의 모임

사람이 만들어 가는 생활공간이다. 서울의 모든 구성원은 이 도시의 공동 창조자이자 예술가라는 자부심을 기셔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교사
별 없이 인간의 존엄을 보장받으며 지속가능한

서울시 인권정책 평가 - 2.2

- 시정목표에서 실종된 인권정책
 → 인권을 인권이라 하지 않는 흥길동식(?) 인권 행정 낡아



서울시 인권정책 평가 – 2.3

- 자치단체의 미약한 인권 책무성
 - 책무로 인식하기 보다 단체장의 인권을 업적 수단으로 인식
- 행정편의적 거버넌스 … ‘관행적’ 인권행정으로 되돌아 갈 위험성
 - 인권위와 시민사회를 인권행정의 파트너로 인정, 취약한(vulnerable) 인권 거버넌스 구축
 - 시의 입맛에 맞지 않을 때는 일방적 결정, 시민사회의 도구화
 - 낮은 수준의 공무원 인권감수성과 전문성, 선입견, 업무 담당자의 잦은 교체와 부족한 인력
 - ➔ 준비 안된 공직사회, 역부족 시민사회

서울시 인권정책 평가 - 2.4

- 가장 어려운 과제, 시민참여
 - 인권시민사회와의 네트워킹 만으로는 한계
 - 인권헌장 제정과정에서 가능성
 - 왜곡된 여론 배제 문제



인권정책의 7가지 원칙

서울시 인권정책 평가 – 2.5

- 조례가 보장하는 인권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위상의 한계
 - 행정위원회가 아닌 자문기구, 비상임 위원, 위원들의 열정과 헌신에 의존
 - 업무의 비연속성, 역할의 쓸림, 위원회에 대한 위원 각자의 비중의 편차
 - 인권담당관의 위원회에 대한 지나친 의존, 과도한 업무 부담
 - 인권 관련 시정 전반에 대한 자문/심의 한계
- 인권도시 서울? → ‘~ing’

인권도시를 향한 비전과 과제

'인권도시' 서울의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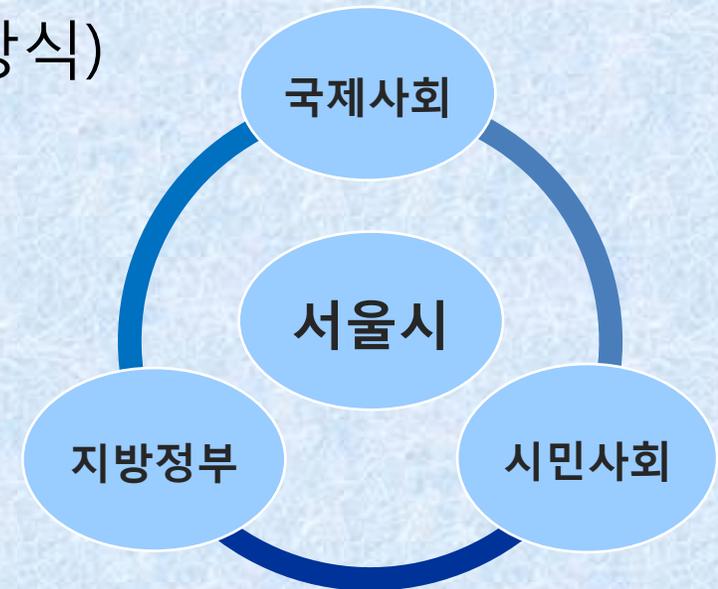
- 인권도시 청사진 그리기
 - 내년 초 인권비전 수립 학술용역 발주 예정
- 시민의 일상생활 속으로 스며들기
 - 인권 mainstreaming 과 인권영향평가 도입
- 도시권의 수립 및 실현
 - 도시개발, 주거권 및 점유권, 보행권, 평등한 서비스 접근권 등

인권도시 서울의 과제 - 1

- 인권위원회의 역할 정립
 - watch dog? or good goverance?
 - 독립성 강화?
- 인권 레짐 재구성
 - 행정위원회 or 자문/심의기구
 - 합의제 인권위원회 or 독립제 옴부즈퍼슨 or 정책자문과 조사/구제의 통합
 - 사무국 설치와 상임위원 제도
 - 서울시 독립기구 or 의회 설치
 - 인권센터 or 인권재단

인권도시 서울의 과제 - 2

- 인권관련 교육 통합 및 운영체계 정비
 - 인권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 장애인 인권교육, 인권과 복지 교육 등
- 공동체에 기반한 인권도시 만들기 (시민참여의 방식)
- 국제사회, 타 지방정부,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킹



감사합니다